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 2016-1호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
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,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』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월 15일  
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

## 1. 제정이유

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,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관계공무원과 증인,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,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,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, 영상물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(안 제15조제4항 신설)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정비(안 제2조 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0조, 국회법 제57조

나. 예산조치 : 불필요

다. 사전협의(승인) : 불필요

라. 입법예고(2016. 1. 15. ~ 1. 20.)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(참조:의회사무국 의사팀, 전화 901-4521, FAX 901-4519)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(찬·반여부와 사유)

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